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안전인증기관 지정기준(비영리법인·단체) 명시〉
■ 노종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465호)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노중면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8. 28.
3. 회부연월일 : 2025. 8.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을 대상으로 제품의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 등을 거쳐 제품의 안정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KC인증 제도(제품안전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안전인증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음.

그러나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는 영리법인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

윤석열 정부는 당시 인증기관 간 경쟁을 통한 인증 처리 기간 단축과 서비스 개선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곧 KC 인증의 민영화 논란으로 확산되었고 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 훼손, 제품 안전성

저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며 결국 해당 개정안은 철회됨.

이에 본 개정안은 현행법상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대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영리기관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KC 안전인증 제도가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할 경우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u>법인이나 단체</u> 중에서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 ----- ----- ----- -- <u>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u> ----- ----- ----- -----.
②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u>법인이나 단체</u> 는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 --- <u>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u> --- ----- -----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산업통상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생활용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위해도(危害度)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등 4단계로 구분된 안전관리 절차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한 제품만 시장에 출시하도록 관리하고 있음.

[현행 제품안전관리¹⁾ 제도 현황]

구분			인증 등 준수절차	안전관리품목		
				전기	생활	어린이*
인증 위해도 ↓	↑	① 안전인증 (45개 품목)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인증기관) → KC 표시	36	5	4
		② 안전확인 (106개 품목)	 제품시험(안전확인시험기관) → KC 표시	64	26	16
		③ 공급자적합성 (106개 품목)	 자체 제품시험 可 → KC 표시	76	16	14
		④ 안전기준준수 (26개 품목)	 KC 표시 안함 (별도 사전 인증 규제 없음)	-	26	-
합계			283개 [전기·생활(249개)/어린이(34개)]	176	73	34

* 어린이제품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제도 적용
자료: 산업통상부

-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제품안전관리"란 제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중 ‘안전인증²⁾’은 소비자 위해 우려가 가장 높은 제품군에 적용되는 제도로,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이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실시한 후 KC 마크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음.

[안전인증기관 지정 현황]

구분	기관명	지정 품목
전기 용품 (3)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안전인증 전품목(36품목)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안전인증 35품목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안전인증 35품목
생활 용품 (6)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물놀이기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물놀이기구
	KATRI시험연구원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FITI시험연구원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비비탄 총
	KOTITI시험연구원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자료: 산업통상부

현행법 제4조³⁾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안전인증"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고, 안전인증을 위해 필요한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4)에서 그 지정기준의 하나로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을 명시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령은 안전인증제도가 소비자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안전인증기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그 지정대상을 비영리법인·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조제2항에서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안전인증을 하기 위한 조직·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규격의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갖추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3.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분류 중 3분의 1 이상의 분류에 대하여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4.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분류 중 안전인증을 수행하려는 분류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나.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5.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인증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6.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품 안전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것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는 일정한 시험설비·인력 등의 역량을 갖추면 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지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진입 규제에 해당되므로, 영리·비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도 인증기관 진입을 허용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⁵⁾하였고,

2023년 12월 산업통상부는 국무조정실(규제혁신추진단)이 추진한 ‘인증규제 정비방안⁶⁾’의 일환으로, KC인증 처리기간 단축과 인증서비스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영리기관의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⁷⁾하였음.

동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 중 비영리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과, ② 특수·고가 시험설비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과 계약이 가능하도록 자체 설비보유 요건을

5)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비영리/영리) 개선 요구 경과(2018~2023)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5월) 공정위에서 현행법령의 인증기관 비영리 요건 폐지 검토 요청<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추진과제」 일환- ('20.3월) 비영리 요건 관련 국무조정실 문의- ('23.3월)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영리기관 허용) 관련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 협의 |
|--|

자료: 산업통상부

6)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2024.02.27. 발표,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7) 입법예고 기간: 2023.12.26.~2024.02.24.

완화하는 내용임.

그러나, 2024년 5월 정부가 국민의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⁸⁾에 대해서 KC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⁹⁾’을 발표하자,

KC인증 의무화에 따른 인증 비용¹⁰⁾ 부담으로 인해 기존의 값싼 해외제품의 가격 상승이 우려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지적¹¹⁾과 함께,

영리기관의 지정 허용으로 인해 인증기관 간 과열 경쟁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 안전이 후퇴될 수 있다는 비판여론이 확산¹²⁾되면서, 정부가 기존 방침을 철회¹³⁾함에 따라 현재까지 안전인증기관의 지정대상은 비영리법인·단체로 유지되고 있음.

8) 어린이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 및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온수매트 등)

※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제품안전관리 제도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거친 후 국내 유통 중임.

9)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관계부처 합동)” (2024.05.16. 발표,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10)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제품마다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KC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4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임.

11) ‘해외직구 KC인증 의무화’ 반발에…정부 “유해성 확인된 것만 차단”(경향신문, 2024.05.19.)

12) ”KC인증 기관 간 경쟁 촉진“ 한다는 정부…인증기관 민영화 논란(오피니언뉴스, 2024.05.23.)

13) ‘해외직구 금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한국경제, 2024.05.27.)

이에 개정안은 안전인증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법률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안정성 강화와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와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은 개정안과 같이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을 법률로 상향하여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이나,

공정거래위원회와 일부 안전확인시험기관¹⁴⁾에서는 일정한 시험설비, 인력 등의 역량을 갖춘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리 위원회에는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¹⁵⁾이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4) 안전확인시험기관은 현행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영리기관도 지정 가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2항에서 "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1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475호, 노종면의원 대표발의안, 2025.08.28. 발의)

문 의 처
02)6788-5457

[참고] 개정안 관련 주요 의견

구분		의견 요지
산업통상부		○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요건(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을 법률로 상향하여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함
공정거래위원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여 안전인증기관을 정하려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경쟁제한 우려가 있어 신중검토 필요 ○ 일정한 시험설비·인력 등 역량을 갖추면 안전 인증 업무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지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진입 규제에 해당 - 인증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영리법인 중에서도 제조업체·수입업체로부터의 재정적 지원 등을 받은 기관을 제외하거나 주기적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가능하므로 영리법인에 대해 아예 진입제한을 하는 개정안은 신중검토 필요
안전 인증 기관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KTC)	○ KC 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 향상 및 제품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요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을 법률로 상향조정하여 개정하는 것에 동의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KTR)	○ 안전인증업무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어, 영리추구 보다는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하기에 안전인증 업무 수행기관의 중립성,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 기관 지정 요건을 비영리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해석상의 논란을 제거하고,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 법률안에 찬성
	한국산업기술 시험원(KTL)	○ 안전인증은 국민의 건강 · 안전 ·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공공업무이므로, 공정한 인증관리를 위해 안전인증기관의 자격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 ○ 안전인증기관에 영리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할 경우 외국기관도 KC인증기관으로 개방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국내기업이 개발한 우수제품의 기술보안이 취약해지고 국내 인증시장에 진출할 다국적 해외인증기관을 통해 우수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음 ○ 국내전기용품 KC인증시장의 규모가 작은데 반해 민간에 인증기관 개방시 과다경쟁으로 제품인증 품질저하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려 ○ 국내민간시험기관의 경우 모든 운영은 자체 수입에만 의존되고 있기 때문에 제반 운영행위는 공정성보다는 수익 창출의 영리성에 우선적일 수밖에 없음 ○ KC 품목 중에는 설비 구축비용이 높거나, 인증신청이 많지 않은 부품분야도 있으나, 인증기관이 시험·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공익기능에 대한 필요성 때문

구분		의견 요지																																			
안전 확인 시험 기관	(주)디티앤씨	○ 2024년 입법 예고 고시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인증인증기관을 포함한 유관기관 및 국민참여 입법센터를 통한 의견 수렴이 완료되었음. 국내 시험기관 등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한 정부 정책에 따라 이미 인증설비 투자와 인력 충원을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임. 일관성없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안전인증기관 진입을 준비중인 기업(기관)에게는 투자손실 등 발생으로 재무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며, 국내 인증산업의 위축과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임 ○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영리법인이 인증시장을 주도하며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024년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의 매출액 등 순위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조원) <table><tr><th>순위</th><th>기관명</th><th>국가</th><th>매출액</th><th>영업익</th></tr><tr><td>1</td><td>SGS</td><td>스위스</td><td>10.5</td><td>1.6</td></tr><tr><td>2</td><td>BV</td><td>프랑스</td><td>8.6</td><td>0.7</td></tr><tr><td>3</td><td>Intertek</td><td>영국</td><td>5.9</td><td>1.0</td></tr><tr><td>4</td><td>TUV S</td><td>독일</td><td>5.1</td><td>0.3</td></tr><tr><td>5</td><td>UL</td><td>미국</td><td>3.9</td><td>0.5</td></tr><tr><td>-</td><td>KTR</td><td>한국</td><td>0.2</td><td></td></tr></table> * 출처 : 기관 고시 내용, ChatGPT ○ 국내 안전인증기관의 매출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번 법 개정 시도는 글로벌 인증 시장의 운영 방향과 역행하므로 영리법인의 안전인증기관 진입 허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제표준 및 국내표준(KS Q ISO/IEC 17065)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의 KOLAS 사무국이 철저히 검증한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인증기관 신청 자격을 부여하며, 최종적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인증기관 적격성 여부에 대해 심사한 후 적합성이 인정될 경우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며, 지정된 이후에도 엄격한 관리 감독 및 사후 심사를 통과해야 자격 유지가 가능하므로 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품 안전성 등에는 문제가 있을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심사제도 강화, 재제조치 강화 등은 필요할 수 있음 ○ 현 정부의 국정 정책 방향에 규제 합리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임 ○ KC 안전인증의 경우 제도적 규정은 유지해야 하지만 “비영리기관”만 안전인증기관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국제표준 및 국내표준에 따라 적합성 인정을 받은 영리기관에게 안전인증을 제한하는 차별적 정책이며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국정 목표와도 대치됨. 참고로, 2018년 공정위는 동법 관련 민간기업의 진입을 막는 경쟁제한적 진입장벽에 대해 “안전인증 독점”을 풀고 규제를 완화할 것을 산업부에 권고한 바 있음	순위	기관명	국가	매출액	영업익	1	SGS	스위스	10.5	1.6	2	BV	프랑스	8.6	0.7	3	Intertek	영국	5.9	1.0	4	TUV S	독일	5.1	0.3	5	UL	미국	3.9	0.5	-	KTR	한국	0.2	
		순위	기관명	국가	매출액	영업익																															
1	SGS	스위스	10.5	1.6																																	
2	BV	프랑스	8.6	0.7																																	
3	Intertek	영국	5.9	1.0																																	
4	TUV S	독일	5.1	0.3																																	
5	UL	미국	3.9	0.5																																	
-	KTR	한국	0.2																																		

구분	의견 요지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정하는 것이 WTO TBT 협정 (8.6조-적합성평가)에 명백히 저촉될 수 있으며, 최근 현정부가 CPTPP 가입을 본격 검토하는 시점에서의 무역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주)에이치시티	○ 법 일부 개정을 통해 KC인증기관 지정요건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명확히 하려는 이유는 공공 영역의 관점에서 볼 때 일면 공감이가는 부분은 있으나 시험인증산업을 하나의 국가적 산업분야로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간과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2023년 국내 시험인증산업의 시장규모는 15.5조원, 글로벌 시장은 294조원으로 년평균 5%의 성장률을 보이며, Eurofins, SGS, UL 등 글로벌 인증기관은 각 지역의 시험인증기관 인수 및 사업분야 확대를 통해 몸집을 키우며 매년 십수조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제3자 시험인증분야의 비영리 및 영리 기관수는 15:66의 비율로 영리기관이 압도적이며 대부분 영세하거나 다수의 경쟁력 있는 기관들(KCTL, CTK, 원텍, NCT)은 이미 글로벌 인증기관에 인수합병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시험인증산업이 외국계 기관에 종속화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 국내 비영리 및 영리 기관에게 KC인증기관의 자격은 글로벌 인증시장에서 국제 경쟁력 확보 및 마케팅에 유리한 요인으로 판단되며(‘25년 현재 6개 비영리 K기관이 중국 현지 진출 및 서비스 제공 중), 국내 비영리 기관의 특성(공공성 중시)상 가지는 글로벌 경쟁력 한계의 극복,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 혁신 및 효율화는 영리 민간시험기관이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국내 시험인증산업의 공공성 및 시험인증결과의 신뢰성은 국내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적합성평가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와 시장사후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보장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결론적으로, 국내 영리 민간시험기관에게 법적으로 KC인증기관 지정요건이 보장되어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영역과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영리 민간시험기관이 공정한 경쟁과 기회를 가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험인증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되고(동법 시행령 제7조1 영리법인 허용), 완화되는(동법 시행령 제7조3 최소 인증 품목수 축소 등)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 추가하여, 만약 일부 개정안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면 현재와 같이 비영리 기관이 시장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민간시험기관과 경쟁하는 활동들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으로써 마땅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구분		의견 요지
		○ 현재 비영리 6개 KC인증기관들은 시험과 인증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험과 인증, 시장감시 기능을 분리하는 측면에서 비영리기관의 시험활동을 일정부분 법적으로 제한하여 비영리 및 영리기관이 함께하는 발전적인 시험인증산업 생태계가 조성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료: 산업통상부